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0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관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내용·대상·기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 라. 지원중단 및 환수,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 마.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 ##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0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나. 특수학교(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

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

너가정에게 지급한다.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1,000L 한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

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읍·면장 및 보건소·보건지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2021.12.14. 일부개정, 2022.6.15.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명목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2022.10.18. 일부개정, 2023.4.19.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 (2013.3.23. 타법개정·시행)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조례)**」 (2022.10.18. 일부개정·시행)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1가구당 매월 80ℓ를 한도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